# 「서울시50플러스재단 회계 업무처리 지침」 발췌 강사비 지급기준

# ② 강사비

## 1. 일반교육 강사

	대상(전.현직)		지급액(원)	
등급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매시간)
특별1급	<ul> <li>대학교 총장(급)</li> <li>장관(급),</li> <li>광역지방자치단체장</li> <li>대사</li> <li>국회의원</li> </ul>	<ul> <li>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li> <li>대기업 총수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li> <li>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li> </ul>	400,000	200,000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 특별행정기관장	<ul> <li>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li> <li>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li> </ul>	320,000	160,000
일반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 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4급이상 공무원	설립 10년 이상의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 이상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법무사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컨설턴트 (대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240,000	120,000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ul> <li>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이상</li> <li>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li> <li>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li> <li>연구기관의 연구원</li> <li>일반 컨설턴트</li> </ul>	150,000	75,000

	대상(전.현직)		지급액(원)	
등급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sup>-</sup> 민간분야 종사자 초과 매시간 지급

### 2. 정보통신교육 강사

=7		지급액(원)	
등급	대상(전·현직 포함)	기본 (1시간)	초과 (매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 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100,000	8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 이 외의 강사	80,000	7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이러닝	•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 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 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 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 3. **다수인 출강 강사**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시간	강사인원	지급액(원)
	5인 이하	500,000
2시간 미만	6인 이상 ~ 10인 이하	700,000
	11인 이상	900,000

	5인 이하	700,000
2시간 이상	6인 이상 ~ 10인 이하	900,000
	11인 이상	1,100,000

- 교육운영 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시중가를 적용

#### 4. 퍼실리테이터(FT)

등급	대상	지급액(원)	
<u> </u>	416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FT 1급	•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000	150,000
FT 2급	•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00,000	130,000
FT 3급	•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교수 이상 •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000	100,000
FT 4급	•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000	80,000

-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 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5. 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1) 강의시간 산출
  - 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초과는 3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산출 (30분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강의일자별 산정이 원칙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2) 여비 산정 기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을 감안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대표이사 방침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